

## 현장실습운영위원회규정

제정 : 2020.03.01

개정 : 2024.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규정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운영 및 현장실습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현장실습운영계획 수립
2. 현장실습 프로그램 계획수립·운영·평가·개선
3. 현장실습이수율 향상 방안 계획수립 및 추진
4. 현장실습 업체 발굴 및 협력체제 구축
5.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03.01.>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현장실습지원센터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타)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